



Corporate Tax in the UAE

입법된 UAE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개요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UA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MOF”)는 2022 년 1 월, UAE 내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22 년 12 월 9 일 [Federal Decree-Law No. 47 of 2022](#) (이하 “UAE 법인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UAE 법인세법은 2023 년 6 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UAE 법인세법에 대한 영문 FAQ 는 UAE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UAE 법인세법은 각 Chapter(#)별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목	법령 요약						
2	세율 및 법인세의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됨. <p>일반적인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AED 375,000(*) 미만</td> <td>0%</td> </tr> <tr> <td>AED 375,000 초과</td> <td>9%</td> </tr> </tbody> </table> <p>(*) UAE Cabinet Decision 에 따라 별도로 결정될 예정</p>	과세표준	세율	AED 375,000(*) 미만	0%	AED 375,000 초과	9%
과세표준	세율							
AED 375,000(*) 미만	0%							
AED 375,000 초과	9%							

Qualified Free Zone Person(*)n 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분류	세율
적격 소득	0%
비적격 소득	9%

(*) UAE 법인세법 Chapter 5 참고

3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① 정부 기관 (government entity)
 - ② 정부소유기관 (government controlled entity)
 - ③ 채굴업(extractive business)
 - ④ 채굴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천연 자원 사업(non-extractive natural resource business)
 - ⑤ 적격 공익단체 (qualifying public benefit entity)
 - ⑥ 적격 투자펀드 (qualifying investment fund)
 - ⑦ 공적/사적 연금 또는 사회보장기금 (public/private pension or social security fund)
 - ⑧ ①, ②, ⑥, 또는 ⑦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 소유하고 지배하는 UAE 내 설립된 법인은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면제 가능

4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거주자(Resident Person)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UAE 세무목적상 거주자임.
 - UAE 내 설립된 법인 (UAE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법인 포함)
 - 외국에 설립된 법인 중 UAE 내에서 관리하고 지배하는 법인
 - UAE 내 사업(Business)를 영위하거나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y)를 영위하는 자연인 [UAE Cabinet Decision 에 따라 별도로 결정될 예정]

비거주자(Non-Resident Person)

- UAE 세무목적상 거주자가 아니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UAE 세무목적상 비거주자임.
 - UAE 내 고정사업장을 영위하는 자
 - UAE 원천 소득의 귀속자
 - UAE 내 과세 연계점(Nexus)이 있는 자 [UAE Cabinet Decision 에 따라 별도로 결정될 예정]

과세소득

거주자

- 거주자 법인 (resident juridical person)은 국내(UAE) 및 국외원천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함.
- 거주자 자연인 (resident natural person)은 UAE 내 사업(Business) 및 사업활동(Business activity)으로부터 발생한 국내(UAE) 및 국외외원천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함 [사업 및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은 UAE Cabinet Decision 에 따라 별도로 결정될 예정]

비거주자

- 비거주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의 소득으로 함.
 - 비거주자의 UAE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UAE 원천 과세소득(taxable income)
 - 비거주자의 UAE 원천소득 중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소득
 - 비거주자의 UAE 과세연계점(Nexus)으로부터 발생하는 UAE 원천 소득

		<p>고정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거주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UAE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함. 비거주자가 UAE 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UAE 내 비거주자를 위하여 UAE 내 사업 또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Qualifying Free Zone Person	<p>Qualifying Free Zone Pers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이란 UAE 자유무역지대(Free Zone) 내 등록된 자로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임. UAE 법인세법 상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요건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에 적절한 사업상 실체(substance)를 보유할 것 적격소득을 수령할 것[사업 및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은 UAE Cabinet Decision 에 따라 결정될 예정] 법인세 일반 과세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 및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절차를 준수할 것 <p>Qualifying Free Zone Person 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에게 적용되는 0%의 세율은 해당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이 등록된 자유무역구역의 법률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 적용됨.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기간이 50 년을 초과하지는 못함. <p>Qualifying Free Zone Person 의 법인세 일반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음.
6	과세소득의 산정	<p>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일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UAE 법상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에 따라 결정됨. 과세소득은 회계상 소득에서 (1) 미실현 손익, (2) 비과세 소득,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특수관계인 간 거래, (6) 결손금 공제 (7) 기타 세제 혜택 등을 조정하여 산정됨.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납세의무자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적 이익과 손실 중 다음 항목을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가치측정 또는 손상차손 회계처리 대상 자산 또는 부채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자본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또는 부채 <p>소기업관련 세제 혜택 (small business relie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당기 및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이 UAE 재무부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UAE 법인세법상 해당 기간 동안 동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할 수 있음. 일정 금액은 AED 375,000 일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요건이 추후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비과세소득	<p>거주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소득 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 등의 소득은 UAE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p>Participation Exem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icipating Interest(경영참여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양도소득, 기타 소득 분배 그리고 기타 소득 (외국환차익 또는 Participating Interest 로부터 발생한 손상차손 포함)은 대상 납세의무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icipation Interest 를 5% 이상 보유할 것 Participation Interest 를 연속해서 최소 12 개월 간 보유할 것 (이와 상응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Participation Interest 로 인하여 지분 해당 법인 소재 지역에서 9%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 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Participation Interest 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할 경우 동 법에 따른 Participation Exemption 을 적용 받지 못하는 지분이 Participation Interest 의 50% 이상이 아닐 것 <p>외국 고정사업장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는 외국에서 9% 이상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 외국고정사업장의 손익과 비용을 UAE 법인세법상 산입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음.
<p>8 세액 감면</p>	<p>적격 그룹 간 양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요건 충족 시, 적격 그룹내 납세의무자 간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과 비용은 법인세법상 각 납세의무자의 손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양도 후 해당 자산을 2 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함.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된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시가로 기록되어야 함. <p>구조조정(restructuring)에 따른 세액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요건 충족 시 납세의무자 간 적격 구조조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익이 인식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구조조정 이후 최소 2 년동안 구조조정 대상 사업(business) 또는 주식(shares)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보유하여야 함. 사업 또는 주식의 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인식되어야 함.
<p>9 손금</p>	<p>손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가 아닌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기부금, 벌과금,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등)은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p>손금산입 제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비용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연도의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의 3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과세소득은 EBITDA 산정 시 산입되지 않음.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에는 UAE 재무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 내 발생한 접대비(entertainment, amusement or recreation expenditures)의 경우,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단, 예외 사항이 존재함.

10	특수관계인 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에 따라, UAE 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기준 (arm's length standard)를 충족해야 함. 비교가능요소 (comparability factors)에 기반한 이전가격규정 관련 세부 내용 및 지침은 법인세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음. 거래가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UAE 과세관청(Federal Tax Authority; FTA)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11	결손금의 공제	<p>결손금의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손금은 기한 없이 이월되어 차기년도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음(“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공제 대상 과세연도 과세소득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과,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손실, 그리고 면세 혹은 비과세 대상 자산 또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음. <p>법인 간 결손금의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결손금 전액 혹은 일부를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이전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손금을 이전하는 납세의무자와 결손금 이전 대상 납세의무자 (“결손금 이해관계자”)는 모두 UAE 거주자 법인이어야 함. 한 결손금 이해관계자가 다른 결손금 이해관계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75% 이상 보유하거나, 제 3 자가 결손금 두 이해관계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75% 이상 보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율 조건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시작부터 이전된 결손금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공제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 결손금 이해관계자는 전부 동일한 회계연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p>이월결손금 관련 제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에 법인의 소유권이 50% 이상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년도의 결손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다만, 당해년도에 50% 이상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동일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대한 결손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단, 증권시장에 상장한 상장기업의 경우 본 조항 상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12	연결납세제도	<p>연결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는 법인이어야 함(이하 “연결대상모법인 또는 연결대상자법인”) 연결대상모법인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하여 연결대상자법인의 지분, 의결권, 이익 및 순 자산에 대한 권리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연결대상모법인 및 연결대상자법인은 법인세법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 법인이 아니어야 하며,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이 아니어야 함. 연결대상모법인의 회계연도와 연결대상자법인의 회계연도는 일치하여야 하며, 각 법인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UAE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UAE 법인세법은 연결 그룹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은 연결그룹에 대한 가입 및 탈퇴, 그리고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p>연결그룹의 과세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의 수익과 비용(financial results), 자산과 부채를 합산하고 연결조정항목을 제거하여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UAE 법인세법은 (1) 새로운 연결자법인의 연결그룹 가입, (2) 기존 연결자법인의 연결그룹 탈퇴 또는 (3)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13	세액의 계산	<p>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은 AED 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 되어야함. 또한, 외화 금액 환산 시 UAE 중앙은행에서 공표하는 환율에 따라 환산이 이루어져야 함.
14	납부 및 환급	<p>납부 및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9 개월 이내 또는 추후 UAE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기한 내 납부되어야 함. 특정 상황에 한하여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15	조세회피 방지 규정	<p>조세회피 방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거래 또는 계약의 주요 목적이 (또는 목적중의 하나가) 조세회피를 위함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AE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경정하거나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17	법인세 신고 및 증빙절차	<p>법인세 신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신고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연결모법인은 연결그룹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 <p>재무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 산출에 사용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UAE 재무부는 특정 납세의무자의 경우 감사 또는 인증된 재무제표를 유지할 것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p>이전가격 문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특수관계자 및 연결자법인과 거래 및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특정 사업연도 내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인과 (재무부가 별도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진행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를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함. 납세의무자는 재무부 요청 시 30 일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p>사업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연도는 법인세 신고서 의무가 부과되는 1 회계기간을 의미함. 특정 요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음. <p>사전질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는 정산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

19	경과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 시, 납세의무자의 세무상 자산과 부채의 기초 잔액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직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재무제표 상 금액에 재무부 지침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함. ▪ 납세의무자의 기초 자산과 부채의 기초 잔액은 정상가격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함. ▪ 조세회피 방지 규정은 법인세법이 도입된 이후 발생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됨.
20	종결조항	<p>국제 협약 또는 국제적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은 UAE 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 협약 또는 국제적 합의에 우선되지 않음.

비고

- 상기 내용은 UAE 법인세법과 FAQ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조항들은 UAE 재무부에서 개시하는 UAE Cabinet Decision 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UAE 재무부와 UAE 국세청은 웹사이트에 최신 FAQ 를 게시했습니다.

공공협의문서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 UAE 법인세법의 내용은 2022 년 4 월 재무부가 발행한 공공협의문서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정의 및 요건들에 대하여 조정 및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UAE 법인세법 및 FAQ 는 그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추후 UAE Cabinet Decision 및 UAE 재무부 또는 국세청의 개정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Pillar 2

- 재무부는 업데이트된 자주하는 질문에서 Pillar Two 규칙이 적용되는 대형 다국적 기업(MNC)에 대하여 Pillar Two 규칙이 UAE 에서 채택될 때까지 일반 UAE 법인세 체제를 따르게 될 것으로 암시합니다.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과 같은 여러 관할권에서 적격내국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시행될 예정이며 법인세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UAE 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UAE 의 자회사/관계사/합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Pillar Two 규칙이 UAE 에서 어떻게 과세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 UAE 재무부는 최신 FAQ 에서 OECD Pillar Two 규칙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UAE 의 Pillar Two 도입 시점까지 UAE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UAE 법인세법, 재무부 및 국세청은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에 대하여 아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UAE 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UAE 에 자회사/관계사/Joint Venture 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향후 어떤 방식으로 UAE 내에서 Pillar Two 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UAE 법인세 전담팀

이메일 : cituae@deloitte.com

홈페이지 및 전문가 연락처: <https://www2.deloitte.com/xe/en/pages/tax/articles/meet-deloitte-corporate-tax-team.html>

This publication has been written in general terms and therefore cannot be relied on to cover specific situations;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set out will depend up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involved and we recommend that you obtain professional advice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ng on any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Deloitte & Touche (M.E.) LLP (“DME”) is the affiliate for the territories of the Middle East and Cyprus of Deloitte NSE LLP (“NSE”), a UK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NSE and DME do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3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410,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DME would be pleased to advise readers on how to apply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publication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DME accepts no duty of care or liability for any loss occasioned to any person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as a result of any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DME is a leading professional services firm established in the Middle East region with uninterrupted presence since 1926. DME’s presence in the Middle East region is established through its affiliated independent legal entities, which are licensed to operate and to provide services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levant country. DME’s affiliates and related entities cannot oblige each other and/or DME, and when providing services, each affiliate and related entity engages directly and independently with its own clients and shall only be liable for its own acts or omissions and not those of any other affiliate.

DME provides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and tax, services through 29 offices in 15 countries with more than 5,900 partners, directors and staff.